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524
----------	-------

발의연월일 : 2025. 12. 23.

발의자 : 김예지 · 박덕흠 · 송석준
김상훈 · 임종득 · 김선교
서미화 · 김건 · 고동진
김용태 · 용혜인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요양기관은 노인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개설 · 운영되는 기관임에도 오히려 환자가 요양기관 내에서 학대나 인권침해를 겪는 사례가 발생함. 그러나 혈행법에는 학대행위가 발생한 요양기관에 대한 제재 근거가 미비하여 학대사례가 반복될 구조적 문제가 지속하고 있음. 심지어는 학대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 일부 요양병원이 거액의 국가 지원금을 수령하기도 하는 등, 제도적 공백이 심각한 실정임.

요양기관 내 노인학대와 인권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학대행위 발생 시 해당 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학대행위를 한 기관이 높은 평가등급을 받거나 국가 지원금을 수령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평가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요양기관 개설자, 요양기관의 장 및 종사자 등이 환자에게 폭행 등을 가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요양기관에 업무정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전문요양기관인 경우에는 전문요양기관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이때 요양기관의 인력·시설·장비, 환자안전 등 요양급여와 관련된 사항을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하여 기관의 책임성과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3항제3호, 제47조의4제1항·제2항 및 제98조제1항제4호 신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요양기관 개설자, 요양기관의 장 및 종사자 등이 요양기관에 방문 또는 입원한 환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다만, 요양기관의 개설자가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가. 환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나. 환자에 대한 성폭력 또는 성희롱 등 환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

다. 환자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 치료 및 간호를 소홀히 하여 환자의 건강 또는 안전에 해를 끼치는 행위

라. 환자를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제1항제6호마목에 해당하는 행위. 이 경우 “수급자”는 “환자”로 본다.

제47조의4제1항 중 “실시할 수 있다”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

은 조 제2항 중 “평가할 수 있다”를 “평가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98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요양기관 개설자, 요양기관의 장 및 종사자 등이 요양기관에 방문 또는 입원한 환자에 대하여 제42조제3항제3호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다만, 요양기관의 개설자가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2조제3항제3호 및 제98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요양기관 개설자, 요양기관의 장 및 종사자 등이 제42조제3항제3호 각 목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2조(요양기관) ①·② (생략)</p> <p>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 한다.</p> <p>1.·2. (생략)</p> <p><u><신 설></u></p>	<p>제42조(요양기관)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p> <p>-----</p> <p>-----</p> <p>-----</p> <p>----</p> <p>1.·2. (현행과 같음)</p> <p>3. <u>요양기관 개설자, 요양기관의 장 및 종사자 등이 요양기관에 방문 또는 입원한 환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u> 다만, 요양기관의 개설자가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p> <p>가. <u>환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u></p> <p>나. <u>환자에 대한 성폭력 또는 성희롱 등 환자에게 성적</u></p>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요양기관에 대하여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 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사실을 공단 및 심사평가원에 알려야 한다.

1. ~ 3. (생략)

<신설>

② ~ ⑤ (생략)

-----.

-----.

1. ~ 3. (현행과 같음)

4. 요양기관 개설자, 요양기관
의장 및 종사자 등이 요양기
관에 방문 또는 입원한 환자
에 대하여 제42조제3항제3호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행위를 한 경우. 다만, 요
양기관의 개설자가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제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
외한다.

② ~ ⑤ (현행과 같음)